

「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11월 14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8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11월 2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인재육성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 활용하고,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삭제를 통한 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선발 과정의 절차 간소화(조례안 제5조 및 제9조)
-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최소화 활용(조례안 별지서식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정유진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부결」

- 안 제9조 입사생의 선발 심의를 할 수 있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를 삭제하면서 입사생 선발에 관한 집행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.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- 붙임 1 「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- 2 「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「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5. 11. 14.
- 회부일자 : 2025. 11. 18.
- 상정일자 : 2025. 11. 25.

2. 제안이유

-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 활용하고,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 삭제를 통한 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선발 과정의 절차 간소화(조례안 제5조 및 제9조)
-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최소화 활용(조례안 별지서식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 따라 주민복지의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, 「청년기본법」 제20조(청년 주거지원)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.

나. 입법의 취지

-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삭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시키고, 별지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5조 자격제한에서 입사자격이 “부적합하다고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학생”을 “부족한 학생”으로 개정함.
- 안 제9조의 제목 “(선발 및 심의)”를 “(선발 및 심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“입사생의 선발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”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, 이에 따라, 제1항에는 입사생의 선발 기준과 확정시점에 관한 사항, 제2항에서는 가산점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, 제3항에서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별지 서식에서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·동의 사항과 주민등록번호의 삭제 등을 반영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과 관련한 심의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,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※ 현행 [별지 서식]

마포공공기숙사 입사신청서

등록기준지				전화번호	
주 소				우편번호	
학 교 명					
지 원 자	성 명	한 글		한 자	
	주민등록번호				
	출 신 학 교				
	졸업년도	학 교 별	소 재 지		
	년	초등학교	시(군)	읍, 면	
	년	중 학교	시(군)	읍, 면	
	년	고등학교	시(군)	읍, 면	
차량 소유 여부					
친 권 자	성 명	한 글		한 자	
	주민등록번호				
	직 업	근 무 처		직 위	

※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통 입주자격 필수 기준에 따라,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 조건 위반 시 퇴거 조치
- 본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, 이륜자동차(125cc 이하) 제외

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,
마포공공기숙사 입사를 신청합니다.

202 년 월 일

지원자 성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친권자 성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평창군수 귀하

붙임 **관계 법령**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□ 교육기본법

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 ① (생 략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 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 3. 21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□ 청년기본법

제20조(청년 주거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1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11.14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 활용하고,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 삭제를 통한 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선발 과정의 절차 간소화(조례안 제5조 및 제9조)

나.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최소화 활용(조례안 별지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5. 10. 17. ~ 11. 05. 결과, 제출된 의견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1520호, 인재육성과-10450(2025. 10. 17.)호
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0172(2025. 10. 10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0172(2025. 10. 10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41081(2025. 11. 10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7683(2025.11.11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 [기획예산과-17900(2025. 11. 13.)호]

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부적합하다고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”을 “부족한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심의”를 “심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자격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입사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<u>평창군정조정위원회</u>에서 결정된 학생</p>	<p>제5조(자격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부족한 ----- ----- -----</p>
<p>제9조(선발 및 심의) ① <u>입사생의 선발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9조(선발 및 심사) <삭제></p> <p>① ~ ③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</p>

□ 지방자치법 [법률 제19951호]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/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
작성자	평창군 기획재정국 인재육성과장 이현진
연락처	(033) 330 - 2020